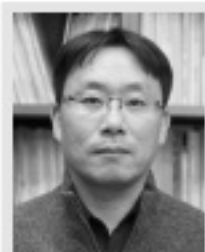


양돈 정책 동향



조진현 농학박사
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장

주요내용

- 국내 한돈산업의 위치와 변화
- 분야별 주요 정책
 - 기업 진출 분야
 - 분뇨·환경 분야
 - 가족 질병 분야
 - 유통 수급 분야
 - 기타(축사시설, 종돈개량 분야)

〈국내 한돈산업의 위치와 변화〉

한돈 산업 현황

양돈사료	사육 마리수	고기생산	분뇨	농가수 (싸이트)
625.7만톤 (비육 363) * 육종 전체: 2,300만톤	1,037만두 (모돈 97)	87만톤 (수입포함 120만) 자급율 73%	1,880만톤 (자원 1,454, 정육 384, 자연광소 42) * 육종 전체: 4,642만톤	4,574농가

- * 15년 미곡7조7천억, 돼지 6조9천억
- * 16년(p) 미곡6조5천억, 돼지 6조8천억



농업 중 한돈산업의 위치

- 농촌경제 선두 산업,
국내 농축수산물 중 생산액 1위
(쌀 : 1위 6조5천억원)

6조8천억원



- 돼지고기는 대표적인 서민 단백질 공급원,
육류 소비량의 약 50% 차지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22.5kg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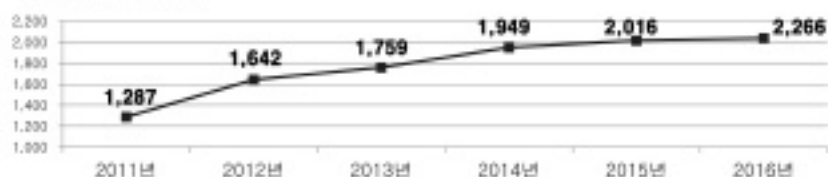
최근 사육두수 및 한돈 농가수 현황

(단위 : 천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육두수	8,171	9,916	9,912	10,090	9,971	10,367
농가수	6,347	6,040	5,636	5,177	4,946	4,574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	1,287	1,642	1,759	1,949	2,016	2,266

*2016년 3분기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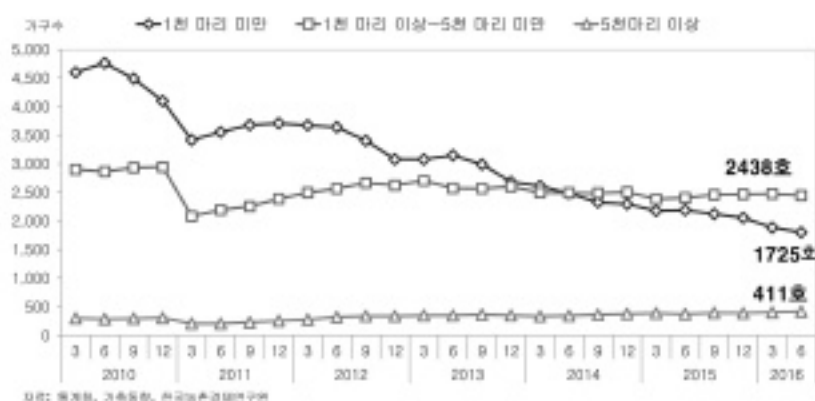
<가구당 사육두수>



- 사육두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농가수는 감소하고 있음
-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가 증가하여 규모화, 전업화 되어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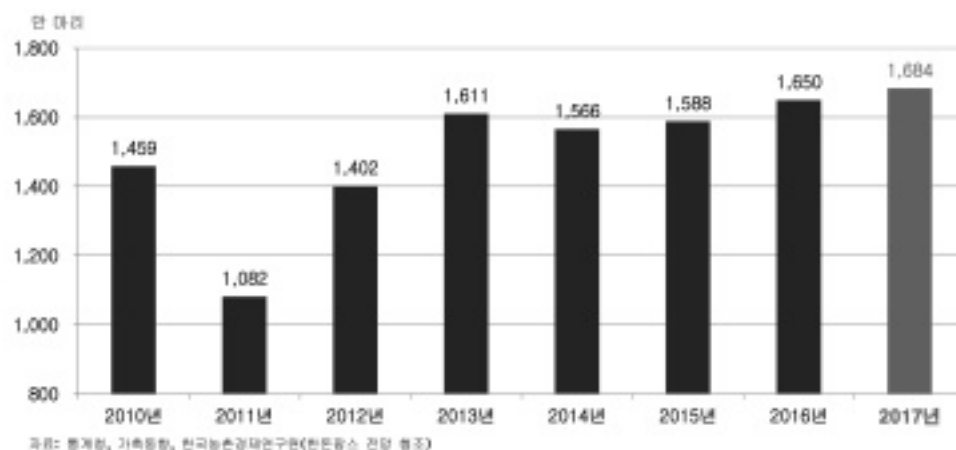
제16회 양돈기술 지상세미나 한돈업계 현안도출을 위한 양돈산업 최신 연구동향

최근 사육두수 및 한돈 농가수 현황



- 2016년 1천 마리 미만 사육 농가 1,725호로 2015년보다 16.0% 감소
- 1천 마리~5천 마리 미만 사육 농가 2,438호로 2015년 대비 1.1% 증가
- 5천 마리 이상 사육 농가 411호로 2015년 대비 5.7% 증가 - 총 사육두수의 39% 사육

출하두수(등급판정두수) 현황 및 전망



- 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라 2017년 등급판정 마릿수 증가 전망
- 1,684만 마리로 2016년 대비 2.1% 증가 전망

돼지 수급, 자급률, 소비량 현황

단위: 천 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P)
공급	전년이월	48.0	47.5	55.2	120.0	107.7	91.2
	생산	761.1	575.6	749.7	853.8	830.2	841.5
	수입	179.5	370.4	275.2	185.0	273.9	357.9
	소계	988.6	993.5	1,080.1	1,158.8	1,211.8	1,290.6
소비	소비	940.6	937.8	958.8	1,049.3	1,118.8	1,204.8
	수출	0.5	0.5	1.3	1.8	1.8	2.0
	차년이월	47.5	55.2	120.0	107.7	91.2	83.8
	소계	989.6	993.5	1,080.1	1,158.8	1,211.8	1,290.6
자급률(%)		80.0	62.0	77.1	81.3	74.8	73.9
1인당 소비량(kg)		19.2	18.8	19.2	20.9	21.8	23.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 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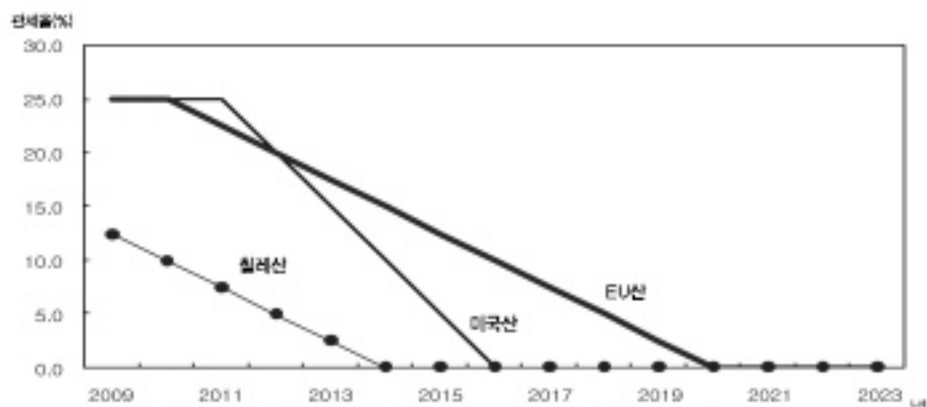
- 2015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014년 1.9kg 증가한 23.7kg 추정
-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로 돼지고기 자급률 감소세

FTA 체결 현황

품목		한·중 ('15.)	한·미 ('15.)	한·호 ('14.4)	한·미 ('12.3)	한·EU ('11.7)
돼지 고기	○ 냉동 삼겹살(25%)	양허제외	13년+ASG	양허제외	2014.1.1 (냉동 육살은 2016.1.1)	2021.7
	○ 냉동 삼겹살, 냉장 기타(22.5%)	양허제외	13년+ASG	10년	10년+ASG	10년+ASG
	○ 돼지 족(18%), 집에 가공품(30%)	양허제외	5년/6년	7년/5년	2014.1.1	2017.7
	○ 냉동기타(25%)	양허제외	5년+ASG	5년	2016. 1. 1	2016.7

제16회 양돈기술 지상세미나 한돈업계 현안도출을 위한 양돈산업 최신 연구동향

FTA 국가별 돼지고기 관세율 변화



주) 지역별로 취급비율이 가장 높은 미국산 냉동 기타, EU산 냉동 삼겹살을 기준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 MSY 목표:

(2012) 16두 → (2013) 17두 → (2015) 20두 → (2017) 22두

한돈산업 이슈



〈분야별 주요 정책〉

1. 기업 진출 분야

기업의 양돈업 진출 문제

구분	2013년 3월(A)		2016년 7월(B)		모돈수 증감 (B-A)
	농장수	모돈수	농장수	모돈수	
팜스코	3	9,600	3	10,200	600
우리손F&G	6	7,711	6	7,400	△311
사조산업	3	3,771	6	10,248	6,477
합계	12	21,082	15	27,848	6,766

■ 2016년 최근 기업의 양돈농장 인수 등 양돈업 진출 사례

- 1) 사조그룹 : 동아원 사료 인수로 사료생산량만큼의 사육두수 확보 방침, 충남지역 농장 인수
- 2) 이제바이오 : 주식회사 상장을 통한 양돈업 진출 기반 마련, 공모자금이 추가 양돈농장 인수 자금으로 사용 우려

■ 기업의 양돈업 진출 문제점

가. 식량안보

- 미국 스미스필드사의 경우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진 상황에서 이윤 추구에 따라 중국에 매각되어 식량 주권 확보 문제 대두 *한국도 돼지고기가 이제 식량산업

나. 소비자 가격 인상 우려

- 하나의 기업이 총 생산의 일정 비율(30% 이상) 이상 점유하였을 경우, 가격 결정권을 가지므로 이에 따른 판매가격 인상 우려 * 기업은 최대 이윤 창출 목표

다. 산업 경쟁력 약화

- 최대 이익창출이 목표인 기업은 참여농가가 높은 수익(수입)/낮은 수익(보장)을 모두 제한하게 되므로, 중소농들의 경쟁력 강화의 한계 발생. 또한 국내 가격구조가 높을 경우 수입 물량을 증가시켜 산업축소 및 철수 가능성도 높음.

라. 농촌경제 황폐화

- (인력) 농촌지역 내 거의 유일하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젊은 인력이 유입되는 것이 축산이며, (자금) 국내 농촌지역 지지체의 생산액 중 60%가 축산업 생산액으로써 도시지역인 기업이 환경문제만 남겨놓고 이윤을 가져간다면 농촌경제 황폐화 우려

마. 기존 농가의 소작농화

제16회 양돈기술 시상세미나 한돈업계 한안도출을 위한 양돈산업 최신 연구동향

기업의 양돈업 진출 문제

■ 2008. 10 : 국회 국감에서 쟁하릴 양계분야 '노예계약' 과 양돈분야 진출 집중 성토

국감서 (주)하림 양돈업 진출 집중성토

하림-노계간 "불법적 계약" 논란 여권-영축자금 폭력-양돈업 진출성토 제언

2008년 10월 12일 (월) 15:02:42

김규태 기자kg7777777@naver.com

지난 8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주)하림의 양돈업 진출을 비롯한 공적의 확충 정책과 이 회사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놓고 타당성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병철(한나라당), 신성범(한나라당), 이성규(한나라당), 김기갑(민주노동당), 유성환(무소속) 의원 등은 이날 하림의 양돈업 진출과 관련, 하림의 양돈기 병합력이 170여억에 달하고, 양계사에서 하림과 농가간 계약에 불평을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하림이 양돈업까지 지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 한국농정신문 2008. 10. 12

■ 2009. 1 : 농식품부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기업형 주업농 육성 방안)' 발표

→ 이에 따라, 향후 농업법인의 비농업인 출자한도 90%로 완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축산업 참여 허용(축산업 개정)

▲농업법인의 비농업인 출자제한 폐지 ▲대기업의 축산업 진입규제 철폐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확대
▲농어업용 시설 투자지 세액공제 확대, 기저지 부가가치세 환급 등 농업부문에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안

■ 2010. 1 : 축산업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 조항 삭제 → 제27조 삭제 (2010.1.25)

제27조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① 「축산규제 및 공영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자제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2. 12 : '가족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 고시 제정 → 제27조 삭제 (2010.1.25)

가족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

[시행 2012.12.26]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305호, 2012.12.26,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축산정책과, 044-201-233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저지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가족계열화사업자의 범위와 지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계열화의 형태) 가족계열화의 지정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직계열화 : 제조에 의하여 농민은 축사시설 및 가족사육에 필요한 노동력 등을 제공하고, 가족계열화사업자는 가족·사료 또는 동물용의약품 등 생산재를 우선으로 공급하고, 당해 가족의 사육에 따라 농민에게 위탁수출을 지원하는 형태
2. 수평계열화 : 제조에 의하여 농민은 가족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족·사료 또는 동물용의약품 등 생산재를 우선으로 공급받아 가족을 사육하고, 가족계열화사업자는 당해 가족을 농민으로부터 구매하는 형태
3. 혼합계열화 : 제1호의 수직계열화와 제2호의 수평계열화를 혼합한 형태

⇒ 계열화 사업체가 사료 및 석유류에 대해, 축산농가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토록 규제

⇒ 축산 계열화 형태에 대해 규정[직접 사육(수직계열)도 계열화에 포함시켜 혜택 부여 명확화]

기업의 양돈업 진출 문제

■ 2013. 3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690호, 2013.3.23, 다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처, 044-201-2338, 2339)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양계, 오리류의 경우 농가 요청사항 반영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열화사업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계열화사업의 육성책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계열화사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계열화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협력 촉진 시책에 관한 사항
6. 계열화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계열화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양돈의 경우, 계열화 사업 발전 및 지원 강화로 중·소농 위축 우려

■ 한돈산업의 바람직한 구조 의견

1) 생산자 중심의 협동조합형 패커(계열화) 육성

- 협동조합은 단순 이윤의 극대화보다 생산기반이 되는 농가의 보호와 유지, 산업 발전을 상위 목표로 추구하고 있음

2) 생산은 농가가, 기반사업(유통, 도축, 사료, 가공 등)은 기업이

- 생산은 농가가 할 수 있도록 전업농을 육성하고, 기업은 농가가 생산한 돼지를 안정적으로 소비자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축, 사료, 유통 등 기반 사업에 주력,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상생 방안 필요

■ 최근 진행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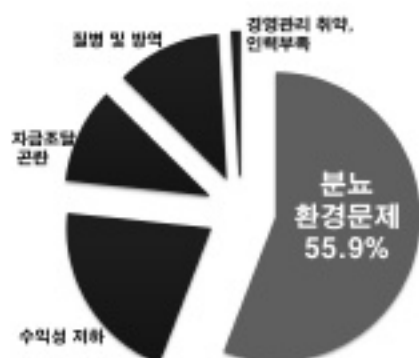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 매일 직영 또는 계약 농가의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함

2. 분뇨 환경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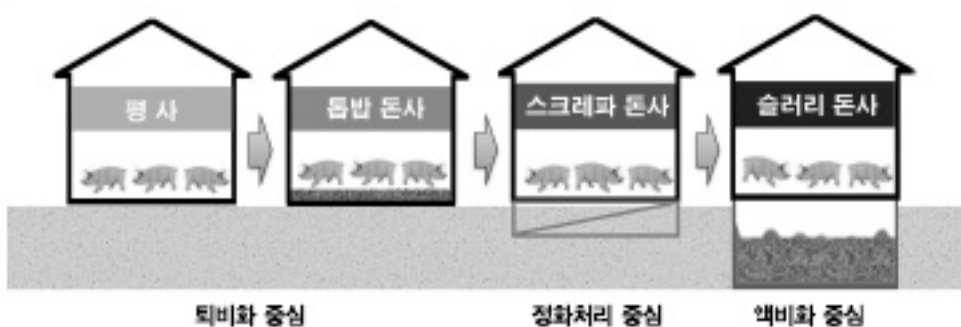
양돈농가 최대 애로사항

■ 양돈농가 최대 애로사항은 “가축분뇨 처리”



※ 양돈농가 경영실태조사 (2014, 대한한돈협회)

축사형태에 따른 분뇨 발생



- 그동안 여건 변화에 따라 가축분뇨 정책 계속 변화
- 퇴·액비화, 정화방류, 해양배출 및 최근 바이오가스, 고효율 연료화까지 가축분뇨 처리시스템 혼재

정부의 가축분뇨 처리 정책

■ 현재 정부의 가축분뇨 처리 지원은 '액비화' 중심

- 개별처리 : 단가 148천원/㎥, 보조 40% 용자 60%, 예산부족으로 신청 어려움
- 공동자원화 : 70~100톤/일 처리물량, 사업비 4천만원/톤, 70% 보조
- 공공처리시설 : 100톤/일 처리물량, 사업비 100~150억원/개소, 100% 보조
(시군 직접 운영)
- 액비유통센터 : 살포차량 및 장비 지원, 사업비 2억원/개소, 70% 보조
- 액비저장조 : 200톤 규모 기준 1천7백만원, 70% 보조
- 액비 살포비 지원 : 15~25만원/ha 지원(평가에 의한 차등 지원)
- (기타) 액비 성분분석기, 액비 부숙도판정기,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용자 사업 등

■ 액비화의 한계

1. 기후변화
2. 규모화
3. 환경규제 강화(전자인계, 악취)
4. 비용

가축분뇨 처리 비용 현황

■ 톤당 처리비는 처리방식에 따라 평균 1만원~2만1천원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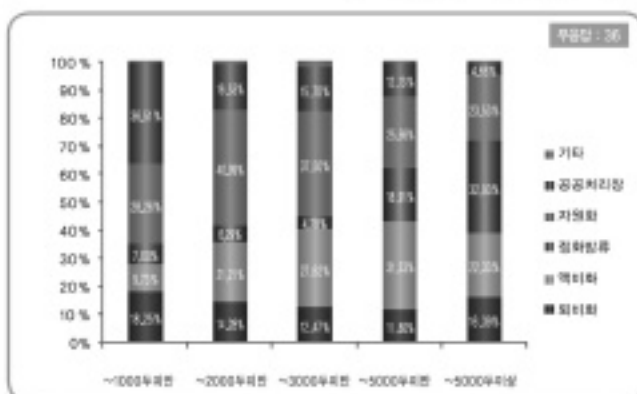
구분	퇴비화	액비화	정화방류	공공처리	위탁처리	기타	합계
톤당 처리비 (원)	17,203	16,047	10,667	15,300	20,958	21,317	16,752

■ 분뇨처리비 비용 지출 차이 심각

하위 10% 평균 : 28,470원/톤 < 평균 : 16,752원/톤 < 상위 10% 평균 : 7,680원/톤

제16회 양돈기술 지상세미나 한돈업계 현안도출을 위한 양돈산업 최신 연구동향

규모별 분뇨처리 방식(양돈)



■ 규모화될수록
정화장류 비율이 높음
5,000두 이상은
32.9% 차지

구분	퇴비화	액비화	정화장류	자연분해	공공처리장	기타	합계
~1000두 미만	18.25	9.73	7.00	28.26	36.51	0.25	100
~2000두 미만	14.28	21.21	6.29	40.99	16.53	0.70	100
~3000두 미만	12.47	27.62	4.78	37.50	15.70	1.93	100
~5000두 미만	11.80	31.33	18.91	25.56	12.13	0.29	100
~5000두 이상	16.39	22.33	32.93	23.53	4.66	0.16	100

• 2014. 경영실태조사

개별농가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

구분	항목	특정지역			기타지역		
		현행 (2015.12.31 까지)	2016.1.1~ 2018.12.31	2019.1.1 부터	현행 (2015.12.31 까지)	2016.1.1~ 2018.12.31	2019.1.1 부터
여가대상 배출시설	BOO	50	40	좌동	150	120	좌동
	SS	50	40	좌동	150	120	좌동
	T-N	250	120	좌동	850	500	250
	T-P	50	40	좌동	200	100	좌동
선교대상 배출시설	BOO	150	120	좌동	350	150	좌동
	SS	150	120	좌동	350	150	좌동
	T-N	850	500	250	-	600	400
	T-P	200	100	좌동	-	100	좌동

- 환경부가 가축분뇨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화방류 기준 강화
 - 특히, 처리가 가장 어려운 T-N의 규제를 대폭 강화
- 당초 환경부는 2년 후 강화기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완화하여 시행

기타 최근 이슈(분뇨 환경)

1. 축산 악취문제

- 농식품부, 악취중심의 증상기 대책 발표(17. 2), 세부 실행계획 마련 중
 - 2016년부터 악취저감사업인 광역악취저감사업 실시
 - 2016년 처음으로 악취방지법에 따른 신고시설 지정(아산)
 - 2015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사용중지 명령 신설
 - 악취방지법 개정으로 배출구 기준 강화 시 대책 마련 필요

(개선 필요) 축산악취에 대한 측정/저감 기준부터 마련되어야 함

2. 액비 전자인계 시스템 도입

-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차량에 GPS, 중량센서 부착 완료
 - 농가 자가신고, 비용부담 등은 해결하였으나, 단속기준 부재 및 제도적 보완 필요

(개선 필요) 현장 적용시 문제점을 도출하여 단계별 적용되어야 함

3. 양분총량제

- 화학비료, 가축분뇨 부하량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종합적 적용 필요
 - 가축분뇨 토양 및 수계 부하량에 대한 정확한 연구조사 필요
 - 화학비료까지 포함한 종합적 총량관리 부재

(개선 필요) 축산 및 가축분뇨에 대한 정확한 부하량 산정으로 양분/수질 총량제를 적용하고, 사육 제한보다는 총량관리에 초점

4. 자가처리 퇴비·액비화 기준

- 2015. 3. 25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일부라도 퇴비, 액비를 자가처리하는 모든 축산농가는 퇴비, 액비화 자가 품질검사를 확보해야 함

- 대부분 농가들이 알지도 못하고, 소규모 한우농가 등은 시료채취도 힘들

(개선 필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품질검사가 가능토록 법 개정 완료(17년 1월)

5. 무허가 축사

- 2015. 3. 25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18. 3. 24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 중지, 폐쇄명령 신설
 - 중앙부처의 세부실시요령 시달 지연(2년 9개월)
 - 시군 건축부서, 환경부서의 미협조로 적법화 실적은 불과 5% 미만

(적법화 대상 총 6만호: 한우·젖소 52,469, 돼지 3,158, 닭·오리 4,563)

(개선 필요) 새로운 대책 마련 및 기간 연장



3. 가축질병(FMD) 분야

반복되는 질병 문제 - FMD

■ 연도별 구제역 예상집중 과태료 부과 기준

〈예방접종 여부 확인 항체가 기준〉

- 11년 7월 : 80%(PI 50)
- 11년 9월 : 60%(PI 50)
- 13년 4월 : 30%(PI 30)
- 14년 9월 : 30%(PI 50)
- 구매확인서, 집중기록부, 집중동영상 기록

예방접종여부(항체가)로 민원 다발

■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 조사 결과

- O1 Manisa+3039 혼합단가 백신 접종 횟수별 항체가형성률

※실험백신: O1 Manisa+3039 ※실험기간: 2015년 8월~12월말

구분	일반농장 (3개소, 120두)									
	1회 접종(8주령)					2회 접종(8주령, 12주령)				
주령시기 (주령)	288마 (13개)	집중 4주후 (298마)	집중 8주후 (309마)	집중 12주후 (309마)	집중 85주후 (369마)	288마 (13개)	집중 4주후 (309마)	2차 4주후 (309마)	2차 8주후 (309마)	2차 12주후 (369마)
O형 항체 형성률	73.3	45.0	23.3	30.0	25.6	70.0	50.0	68.3	67.5	57.5
O1manisa이용 중화항체 형성률	80.0	25.0	5.0	12.5	25.6	71.7	38.3	85.0	45.0	67.5
O3039이용 중화항체 형성률	78.3	73.3	55.0	40.0	59.0	63.3	71.7	93.3	75.0	85.0

- 러시아(프리모스키), 아르헨티나(캠프스) 백신 실험결과

※중화항체형성률(출하시점): 1회접종시 14~85%, 2회접종시 68~100%

■ 구제역 백신접종 횟수별 이상육 발생에 따른 공제금액

연도별	집중횟수	조사두수	이상육 발생률	두당 공제금액(원)
2010년	미접종	12,671	18.6	1,302
2014년	1회	162,089	46.5	8,286
2015년	2회	162,012	73.7	17,378

반복되는 질병 문제 - FMD

■ 구제역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육 발생 자료



〈근육부위 육아종〉



■ 구제역 백신접종 횟수에 따른 손실금액 추정

[단위 : 억원]

접종횟수	구분	비용추정치		
		백신구매비용	이상육 손실액	합계
1회	모돈 100만두	40		
	연간 자돈 2100만두	210		
	계	250	1,325 ¹⁾	1,575
2회	모돈 100만두	40		
	연간 자돈 2100만두	420		
	계	460	2,780 ²⁾	3,240

※ 백신구매비용: 3기백신(6pd50) 두당 2천원 × 접종두수 × 접종횟수(1회 또는 2회)

※ 이상육 손실액: 1) 1회 접종시 : 8,286원 × 연간도축두수 1,600만두

2) 2회 접종시 : 17,378원 × 연간도축두수 1,600만두

4. 유통(정산기준/절식) 분야

유통 - 돼지정산 방식

■ 배경

- 도매시장 박피 작업 불량 감소로 돼지가격 정산 기준 박피에서 탕박으로 전환 문제 대두
(최근 6년간 전국 돼지 거래 현황)

구분	탕박		박피		합계
	두수	비율	두수	비율	
2010년	13,449,761	92.3%	1,123,298	7.7%	14,573,059
2012년	13,484,424	96.2%	533,669	3.8%	14,018,093
2013년	15,560,095	96.6%	547,726	3.4%	16,107,821
2014년	15,227,310	97.2%	434,474	2.8%	15,661,784
2015년	15,500,593	97.6%	383,521	2.4%	15,884,114
2016년(10/10까지)	11,714,523	97.8%	259,166	2.2%	11,973,689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 두수 기준, 2011년은 구제역 기간으로 제외

■ 최근 문제점

- 최근 돼지 출하 물량이 많은점을 이용하여 일부 육가공업체에서 한돈농가에 일방적으로 박피 → 탕박 전환 요구
- 협회에서는 업체 담합 신고 검토 중이며, 박피에서 탕박으로 전환시 한돈농가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최소 지급률 알림

(최근 3년간 박피, 탕박, 탕박(제주제외) 가격 비교)

년도	박피	탕박	탕박(제주제외)
2014년	5,022	4,741	4,542
2015년	5,181	4,939	4,585
2016년(10/10까지)	4,961	4,846	4,340
평균	5,054	4,785	4,503

(탕박(제주제외) 전환시 지급률 변동(3년 평균가 적용))

*박피, 제주 가격차 1년 320원, 15년 100원

구분	박피(a)	탕박(제주포함) · 박피동일가	탕박(제주제외) · 박피동일가
지급률	68.8%	72.8%	77.4%
돼지가격	383,244원	383,183	383,385원

※ 110kg(평균출하체중) × 지급률 × 3년평균 돼지가격

유통 - 질식

■ 배경

- 매년 질식 미이행으로 인한 손실(추정) : 연간 3,586~8,702억원(돼지 1,400만두 기준)
- 지난 3/24 농식품부(방역관리과) 출하전 질식 준수 공문 시행

〈주요 내용〉

- 질식 홍보 기간 : 2016년 4월 말까지
- 질식 지도 기간 : 2016년 5월~12월 말까지
 - ① 1회 위반시 : 서면지도
 - ② 2회 위반시 : 향후 6개월간 당일 계류조치 후 최 후순위 도축
 - 단, 연속 3회 이상 질식 확인시 최 후순위 도축 해제 가능
- 집중 단속 : 2017년 1월부터
- 질식 미이행 출하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도축장 계류 등 행정 처분 실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 가축은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 질식(물은 제외한다)
- * 미이행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출하전 12시간? 도축전 8시간? 논쟁

■ 한돈농가 질식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추진

가. 연구 용역 개요

- 기간 : 2016. 8월 ~ 2016. 11월
- 예산 : 4,500만원(한돈자조금사업)

나. 연구용역 주요 내용

- 한돈농가 질식의 필요성 및 질식 방법(우수사례 조사 포함)
- 질식으로 인한 농가 손실 분석 및 보전 방안 도출
- 관련 정책 건의사항 등

다. 한돈농가 질식 가이드라인(팜플렛) 제작 및 배부

- 7천부 제작 및 지부를 통해 전 농가 배포(지역 교류지원사업 책자 발송시 포함)

5. FTA(축사시설) 분야

축사시설 현대화(FTA)

■ FTA 핵심 대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시행 중

구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합계	487,250	424,000	300,033	262,285	965,990
국고	82,250	63,200	53,322	28,257	245,200
지방비	137,500	106,000	88,704	83,271	400,700
융자	212,500	212,500	122,500	122,500	320,000
자부담	55,000	42,300	35,507	28,257	

- (사업목적) FTA 대상국 수준의 생산비, 생산성 확보
- (문제점) 이율 인하, 장기저리 정책 필요, 표준화된 시설 부재
- (개선사항) 이율 인하 1~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조정



6. 종돈개량 분야

■ 한돈협회가 가축등록기관 지정 조건부 승인 (16. 12.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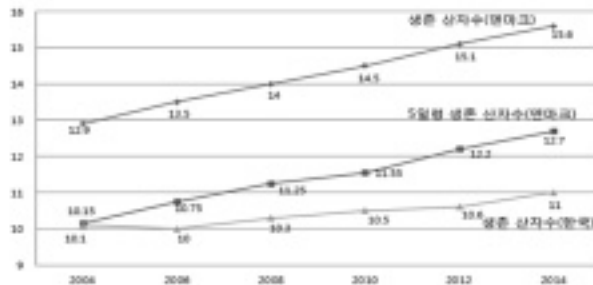
- 국내 종돈의 주요 개량 형질이 양돈 선진국(덴마크) 대비 실산자수는 4.6두(-29.5%) 낮고, 사료요구율은 0.57kg(+20.2%) 더 높아 국내 종돈 개량 수준이 매우 낮음.

항목	한국	덴마크
평균 실산자수	11 ^a	15.6 ^b
사료요구율 (30~110kg)	3.39 ^c	2.82 ^d

a: 14년도 종축개량사업보고서(종개협), b: 덴마크 14년 연례보고서
c: 13년 육산과학원 자료, d: 덴마크 14년 연례보고서

- 또한 개량의 속도가 양돈 선진국(덴마크)에 비해 매우 더딤.

- 10년간(2004년~) 실산자수가 한국은 1두 상승, 덴마크는 2.7두 상승



■ [개선방안] PS 농장 성적까지 감안한 국가 개량 목표 수립과 달성

- 과다한 수수료 경감, 종돈장 서비스 강화
- 종돈등록 자료에 대한 신뢰성 제고
- 한돈팜스를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